

의안번호	2219423
의 퇴 인	임종득의원
회 답 일	2026. 7. 2.
추 계 번호	26B313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7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함(제1항) 9의2. 가축사육 시설의 개선 및 현대화 사업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의무규정

II.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7조 (기금의 용도)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현행법 제43조에¹⁾에 따라 정부는 축산업 발전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산발전기금을 설치·운영 중임

[표 1] 축산발전기금 중기재정계획

(단위: 억 원)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수입	재산수입	165	100	89	100	106
	경상이전수입	1,129	948	1,183	1,247	1,739
	관유물매각대	322	291	296	295	296
	용자·출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5,653	6,907	3,496	4,134	4,523
	정부내부수입	3,189	1,786	6,950	6,804	7,254
	소 계 (A)	10,458	10,032	12,014	12,580	13,918
지출	경상사업비	4,656	5,771	6,292	6,805	7,754
	용자사업비	3,953	4,943	5,246	5,299	5,688
	기금운영비	18	18	19	19	19
	차입금이자상환	431	457	457	457	457
	소 계 (B)	9,058	11,189	12,014	12,580	13,918
순수입 (A-B)		1,400	-1,157	0	0	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1) 법 제43조(축산발전기금의 설치) ①정부는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물 수급을 원활하게 하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 개정안은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가축사육 시설의 개선 및 현대화 사업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추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신규사업 추진 등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추진될 사업의 대상 및 지원 규모·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현시점에서는 해당 사항들을 예측하기 곤란하여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nabo.go.kr